악취방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악취방지]

악취방지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사업장악취방지를 위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배출허용기준 설정,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저감기술 지원과 생활악취방지를 위한 악취관리 등 악취방지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 1
1. 악취방지 개관 4
1.1. 악취방지 개요 4
1.1.1. 악취의 개념 등 4
1.1.2. 악취배출시설 등 5
2. 사업장악취방지 12
2.1. 악취배출원 관리 12
2.1.1. 악취관리지역 지정 12
2.1.2. 악취실태조사 13
2.2. 악취배출허용기준 15
2.2.1. 배출허용기준 15
2.2.2. 배출허용기준 초과·미이행에 따른 시정 조치 19
2.2.3.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보고 및 검사 21
2.3. 악취배출시설 24
2.3.1. 악취배출시설 설치 24
2.3.2.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27
2.3.3.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및 위법시설 폐쇄명령 28
2.4. 악취저감기술 지원 29
2.4.1. 악취저감기술 지원 29
3. 생활악취방지 31
3.1. 악취배출원 관리 31
3.1.1. 생활악취 관리 등 31
3.2.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32
3.2.1. 기술진단 32
3.2.2. 기술진단전문기관 36

1. 악취방지 개관

1.1. 악취방지 개요

1.1.1. 악취의 개념 등

"악취"란

악취

▪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

지정악취물질

▪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다음의 물질을 말합니다(「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별표 1).

종류		적용시기
1	암모니아	2005년 2월 10일부터
2	메틸메르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틸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13	톨루엔	2008년 1월 1일부터
14	자일렌	
15	메틸에틸케톤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7	뷰틸아세테이트	
18	프로피온산	2010년 1월 1일부터
19	n-뷰틸산	
20	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틸알코올	

1.1.2. 악취배출시설 등

악취배출시설

배출시설 종류

▪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1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2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장치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함
4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폐수발생량이 1일 5㎥ 이상인 동·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
5	사료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6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대상 사업장의 시설
7	설탕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8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함)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함
9	그 밖의 식료품 제조시설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함)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10	증류주·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함)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11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12	담배 제조시설	용적이 3㎥ 이상인 습점·건조 공정 또는 호제(糊劑)공정(희석·배분 공정은 제외함)을 포함하는 시설
13	제사 및 방적 시설	용적 합계가 2㎥ 이상인 세모·부잠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4	직물 직조시설	용적 합계가 1㎥ 이상인 호제·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5	석유 염색 및 가공시설	용적 합계가 5㎥ 이상인 세모·표백·정련·자숙·염색·다림질[텐터(tenter)]·탈수·건조 또는 염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6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7	가죽 제조시설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탈모, 탈회,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함)
18	신발 제조시설	롤·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이 330㎡ 이상인 제조시설
19	제재·목재가공 및 합판·강화목재 제조시설	1) 동력이 15kW 이상인 목재 제재·가공연마 공정(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함)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도포·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접합·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용적이 10㎥ 이상인 목재 방부·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3㎥ 이상인 함침·증해·표백·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21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작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인쇄·건조·코팅·압출·접착(접합) 또는 제본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22	석유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유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3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5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6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27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8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함)을 포함하는 시설
29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0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1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2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및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4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5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시간당 5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물질 혼합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재생하는 시설
36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과 1차 금속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7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은 제외함)	1)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 및 피막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용적이 1㎥ 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산·알칼리처리 및 화성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4)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주물사처리공정(코어 제조공정을 포함함)을 포함하는 시설

38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혼합·정련·절연·접합·피복·성형 공정을 포함함)
3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용융·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75kW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40	산업용 세탁시설	작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41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42	폐수 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함)
43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44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고철·폐석고·폐석회·폐내화물·폐유리 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함)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보관시설은 제외함
45	그 밖의 시설	위 1.부터 44.까지의 시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란의 기타 지역 또는 같은 표 제2호 기타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비고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2. 사무실·창고·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사업장악취방지

2.1. 악취배출원 관리

2.1.1.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3항).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

▪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6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7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8항).

▹ 지정 해제·변경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2항 및 제5항).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지정 목적
-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지정대상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 지정대상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 열람 장소

▪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위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2.1.2. 악취실태조사

악취실태조사

실태조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악취실태조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4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이때 조사지점은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의 인근 지역 중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악취물질을 포함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

※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악취실태조사계획의 수립 및 악취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실태조사 방법

▪ 악취실태조사 조사방법은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과 같고, 조사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은 「악취방지법」 제17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시험기준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험법에 따라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합니다(「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

▪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악취공정시험기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시료채취기록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조사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개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되 해당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정확도가 인정되는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따릅니다(「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실태조사 결과보고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 등을 매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4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

▪ 위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항 및 별표 4).

악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
1. 조사목적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주기) 가. 조사기관 나. 조사기간(주기)
3.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 지역 및 조사지점 현황 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4. 조사결과 가. 악취민원 발생 및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1) 악취민원 발생 현황 2)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나. 조사지역 또는 조사지점별 악취측정 현황 — 위치, 조사주기, 조사방법, 조사항목별 측정결과 등 다. 배출허용기준 — 위치, 조사주기, 조사방법, 조사항목별 측정결과 등 라. (필요시) 악취모델링 수행 및 평가 — 모델링 등을 이용한 악취영향 분석 마. 기타 사항
5. 결과분석 및 향후 조치계획 가. 악취관리지역 악취배출 특성에 따른 종합분석 — 악취관리지역 및 인근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등 나. 향후 조치계획 및 종합계획 — 악취배출원 관리, 초과 사업장 관리, 초과지점 관리 등 향후 관리방안

▪ 사고발생·민원유발지역 등 시급히 조사가 필요하여 추가 조사한 지점현황에 대해서는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보고합니다(「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

2.2. 악취배출허용기준

2.2.1.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설정

배출허용기준 설정

▪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 비고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희석한 배수를 말합니다.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5 이하	
스타이렌	0.1 이하	0.05 이하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8 이하	0.04 이하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7조제4항 및 제5항).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위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함)에 있는 시설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시설

√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을 초과하는 시설

1. 복합악취

구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15 ~ 20	10 ~ 15

※ 비고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희석한 배수를 말합니다.

2. 지정악취물질

구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암모니아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2 ~ 0.004	
황화수소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05 ~ 0.1	
스타이렌	0.05 ~ 0.1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4 ~ 0.8	
뷰틸알데하이드	0.05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3 ~ 0.006	
톨루엔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1 ~ 2	
메틸에틸케톤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 ~ 3	
뷰틸아세테이트	1 ~ 4	
프로피온산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1 ~ 0.002	
n-발레르산	0.0009 ~ 0.002	
i-발레르산	0.001 ~ 0.004	
i-뷰틸알코올	0.9 ~ 4.0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4. 열람 장소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2.2.2. 배출허용기준 초과·미이행에 따른 시정 조치

배출허용기준 초과·미이행에 따른 시정 조치

개선 권고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4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악취를 저감(低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4조제2항).

개선명령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라 함)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0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신청은 위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개선 조치

▪ 「악취방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4조제3항).

▪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될 때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검사 전에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배출농도 및 악취저감관리계획, 개선 이후 운영관리계획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단전(斷電)·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위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에는 개선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조업정지명령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1조제1항).

- 위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악취방지법」 제11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9).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1)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악취방지법」 제11조	조업정지 명령			
2)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	「악취방지법」 제11조				
가)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나) 가) 외의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은 그 처분서에 적힌 조업정지일 또는 사용중지일부터 1) 및 2)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함.

※ 2)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함.

√ 2)가)에 따라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2)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나)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 2)나)에 따라 1차 또는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2)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나)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함.

과징금처분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조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 축산시설
- 유기·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해당 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副原料)·용수(用水) 또는 제품[반제품(半製品)을 포함] 등이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한정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위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악취방지법」 제12조제3항).

▪ 위의 과징금은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과징금 부과처분일로부터 계산함)에 1일당 부과금액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되,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합니다. 또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2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9).

2.2.3.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보고 및 검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보고 및 검사

보고 및 검사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7조제1항).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
-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 「악취방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악취방지법」에 따른 지정·신고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 이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악취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위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7조제3항).

※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악취검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악취방지법」 제28조제2호 및 제30조제2항제2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악취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

▪ 이 경우 시료자동채취장치는 시료채취부, 제어부(制御部) 및 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료채취부의 시료주머니는 시료채취를 하기 전에 내부 공기가 대기 중의 공기로 1회 이상 교체되는 것이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악취검사기관

▪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하는 악취검사기관은 다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

- 국공립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 분야의 시험·검사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9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악취방지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악취방지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악취방지법」 제19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9).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악취방지법」 제19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악취방지법」 제19조 제1항제2호				
가) 검사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나)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라) 기술인력이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악취방지법」 제19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검사수수료 등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악취방지법」 제19조 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8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검사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24호, 2021. 11. 1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악취방지법」 제18조제5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8).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1. 시료는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이 채취해야 합니다.
2.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3.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분석해야 합니다.
4. 검사기관이 법인인 경우 보유차량에 국가기관의 악취검사차량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검사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가. 시험일지 및 검량선(檢量線) 기록지 나. 검사 결과 발송 대장 다.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 ※ 검사수수료는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70호, 2021. 10.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악취배출시설

2.3.1.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 사업장 배치도 1부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1부
-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 악취방지계획서 1부
-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위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지사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관할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악취방지법」 제27조제1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 또한 다음과 같이 악취배출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5.에 해당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 악취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1만원(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23조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호).

※ 위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악취방지법」 제30조제2항제1호).

악취방지계획 수립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악취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함)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시험분석자료
- 위의 시험분석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자료

▪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공정(工程)·원료 등의 변경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제3항).

▪ 악취방지계획에는 다음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4).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
1.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절한 시설의 설치 가. 연소에 의한 시설 나. 흡수(吸收) 의한 시설 다. 흡착(吸着)에 의한 시설 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마. 응축(凝縮)에 의한 시설 바. 산화(酸化)·환원(還元)에 의한 시설 사.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2. 성능이 확인된 소취제(消臭劑)·탈취제(脫臭劑) 또는 방향제(芳香劑)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3. 그 밖에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浮游狀) 덮개 또는 상부 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악취방지 조치

▪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한 자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해당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제4항).

▪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이나 자료를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제5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2조).

-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걸려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
-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조지치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악취방지법」 제28조제3호 및 제4호).

2.3.2.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1항).

▹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와 같이 지정·고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4항).

▪ 위에 따라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2항 전단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사업장 배치도 1부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1부

▹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 악취방지계획서 1부

▹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위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관할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악취방지법」 제27조제1호).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2항 후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악취방지법」 제30조제2항제1호).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악취방지 조치

▪ 악취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3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2조).

-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걸려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
-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조치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악취방지법」 제28조제4호).

2.3.3.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및 위법시설 폐쇄명령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함)은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의3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공단에 위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부터 나오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의3제2항. 제3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

-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함)
- 공동 방지시설의 도면 및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 √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및 규모
  - √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 √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방법
-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 악취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운영경비·각종 충당금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 √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과태료·과징금·벌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

▸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함)

위법시설 폐쇄명령 등

폐쇄명령 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은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3조제1항).

▪ 위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악취방지법」 제13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9).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악취방지법」 제13조		
가)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 명령	
나)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		폐쇄명령	
2)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악취방지법」 제13조	경고	사용중지 명령

※ 비고: 사용중지 기간은 그 처분서에 적힌 사용중지일부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완료일까지로 함.

2.4. 악취저감기술 지원

2.4.1.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21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본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다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기술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단서).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위와 같은 사업장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21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제2항).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함)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1.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3.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 또한,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에는 악취저감기술 지원 일시, 악취저감기술 지원 인력 및 준비 사항과 그 밖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악취방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하였을 때에는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등을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

▪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거나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3제3항).

3. 생활악취방지

3.1. 악취배출원 관리

3.1.1. 생활악취 관리 등

생활악취 관리

생활악취 관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

▪ 또한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2항).

>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생활악취방지를 위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수역 악취방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하천·호소(湖沼)·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

개별 법령에서의 악취관리

▪ 그 밖의 개별법령에서의 악취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령	내 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56조제2항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호, 제24조제2항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3호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 안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11호 및 제86조제3항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제4호, 제66조제2항제1호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호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65조제3항제3호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2.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3.2.1. 기술진단

기술진단

기술진단 실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및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다음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 그 밖에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술진단 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2항).

기술진단 대상시설 등

▪ 위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기술진단의 내용·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3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제2항, 별표 5 및 별표 6).

-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1.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6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나.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함)하는 시설	
	마.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2013년 2월 5일부터 추가로 적용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이 5백세제곱미터 이상 5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3년 2월 6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3. 2023년 9월 29일부터 추가로 적용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해당 고시의 시행일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고시의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

내 용	방 법
현황 조사	1.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2.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3.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4.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환경적인 조건 파악 5.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시설진단	1. 자료 조사 가. 설비 및 시설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 점검, 고장횟수 파악 2.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가.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나.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다.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포집 현황 파악 3.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가.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나.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공정진단	1.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2.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3.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4.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분석 5.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가.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절성 파악 나. 악취방지시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6.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분석
운영진단	1. 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2.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절성 파악
시설 개선 및 최적 관리	1.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2.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3.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4.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5.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6.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관리 방법 지도

▪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 전단).

▹ 시장·군수·구청장이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 후단).

▪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을 통보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 통보를 경유한 시·도지사를 포함함)은 해당 이행계획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

▪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4항).

> ※ 기술전문기관의 등록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악취방지-생활악취방지-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기술진단전문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악취방지법」 제30조제1항제2호).

3.2.2. 기술진단전문기관

기술진단전문기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1).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악취방지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1. 또는 2.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임원 중에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등록

▪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함)는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2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 명칭
- 대표자
-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 기술인력

▹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라 지정악취물질 실험실이 갖춰야 하는 장비·실험기기(악취농축장비는 제외함)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지 않고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악취방지법」 제27조제2호 및 제3호).

※ 또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악취방지법」 제30조제1항제3호).

▪ 등록·변경등록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3항).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또는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6조의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악취방지법」 제16조의5제1호부터 제3호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16조의5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함
7. 업무정지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진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진단 업무를 한 경우